

영국 사례 1

**중대한 뉴스의 중심에 서있는 인물의 경우  
전적으로 사적인 정보가 아닌 한 반드시  
익명으로 보도할 필요는 없다**

PCC는 폴라 맥매너스가 「더 선데이 타임즈」를 상대로 제기한 불만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불만신청인은 2004년 9월 12일과 2005년 1월 16일에 「더 선데이 타임즈」가 보도한 『벨파스트 도청장치가 IRA 최고 지도자들을 노렸다』와 『MI5 지휘자가 신페인 본부 도청을 인정했다』 제하의 두 기사가 PCC 강령 세 번째 조항(사생활 침해)과 첫 번째 조항(정확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불만이 제기된 두 기사 중 첫 번째 기사는 불만신청인의 집에서 도청장치가 발견됐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 두 번째 기사는 불만신청인의 집에서 발견된 것과 비슷한 장치가 IRA 본부에서도 발견됐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불만신청인은 두 기사 모두 불

만신청인의 이름을 어떠한 동의도 구하지 않고 밝히고 있어 사생활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첫 번째 기사에서 불만신청인이 IRA에게 모임 장소를 제공했다는 잘못된 보도를 하고 있으며 불만신청인이 연루된 수사 작업에서 도청장치가 발견되었다는 것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불만신청인은 기사로 인해 자신이 위협에 노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문사는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익명보도 원칙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불만신청인은 신페인을 위해 일했고 신페인 측은 도청장치의 존재를 언론을 통해 폭로하고 싶어했다. 신문사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불만

신청인의 이름을 보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담당자는 기사가 보도되기 전에 불만신청인의 의견을 묻기 위해 신페인을 찾았지만 불만신청인이 할 말이 없다며 만나길 거부했다고 말했다.

한편 신문사는 불만신청인이 IRA 모임 장소를 제공했다는 내용을 보도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기사는 불만신청인이 잘못된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확실히 명시하고 있고 주소 또한 기재하지 않았다. 다만 정보국(security service)에서 불만신청인의 아파트에서 마틴 린치와 바비 스토리가 만났다고 추정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신문사는 기사에서 불만신청인이 아파트 수색을 도왔다는 내용을 보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신문사는 수사 작업의 유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PCC는 먼저 불만신청인의 신원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PCC 강령 세 번째 조항 위반 여부를 검토했

다. PCC는 익명으로 남고 싶고 신원이 밝혀지면 위협에 처할 수도 있다고 걱정하는 불만신청인의 입장을 이해하지만, 기사에 나온 불만신청인에 대한 정보가 PCC 강령을 위반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불만신청인의 이름과 일했던 곳의 명칭이 공개되는 것은 PCC의 관점에서는 사적인 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PCC가 사적인 정보라 판단하는 것들, 예를 들어서 개인 연락처, 건강정보, 사적인 공간에서 찍힌 사진 등은 보도되지 않았다.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그리고 불만신청인이 중대한 뉴스의 중심에 서있는 현 상황을 고려해 볼때 신문사는 불만신청인의 신원을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PCC는 판단했다. 이와 같은 경우 PCC 강령은 개인의 익명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PCC는 기사가 불만신청인이 잘못된 것이 없고 아무 의심도 받지 않는다고 보도한 것을 참작했다.

한편 PCC 강령 첫 번째 조항 위반 여부에 대해 PCC는 첫 번째 기사에 부정확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기사는 불만신청인이 의심받지 않고 있다는 점을 확실히 했고 불만신청인이 IRA에게 아파트를 빌려주었다는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단지 마틴 린치가 바비 스토리를 불만신청인

의 아파트에서 만났을 것이라 “추정하고 있다”고만 나와 있고 이것이 사실이라고 말하진 않았다. 비록 기사는 도청장치의 발견이 우

연이라고 생각하기 힘들다는 것을 암시하지만, 불만신청인이 수색작업에 연루되었다는 것을 나타내지는 않았다. □

## 영국사례 2

### 언론으로 인한 보도 피해는 직접적 당사자에 한해 인정될 수 있다

영국 PCC는 미스 마리나 팔롬바가 『호텔에서의 죽음의 투신』이라는 제목으로 「더 선」이 지난 2006년 1월 4일자로 보도한 기사에 대해 제기한 불만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불만신청인은 문제의 기사가 좋지 않은 일로 슬픔에 잠겨 있는 이에게 더 큰 충격을 주는 등 PCC 강령 중 5번째 조항인 “슬픔과 충격에 부정적인 개입”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불만신청인은 다음날 보도된 『변호사 투신자살』 제하의 기사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PCC에 판단을 요청했다.

불만신청인이 이의를 제기한 기사는 캐서린 워드로 신분이 확인된 여성의 호텔 투신자살 사건에 대해 보도하고 있다. 마침 현장에 사진기자가 있었고 「더 선」은 워드가 호텔 가장자리에 서 있는 모습과 떨어지는 도중의 모

습을 담은 두 장의 사진을 기사와 함께 게재했다. 사진은 워드의 자살 소식이 알려지기 전, 신분 확인도 안 된 상태에서 게재됐다.

사망한 워드의 친구인 불만신청인은 워드가 투신자살하는 사진을 기사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불만신청인은 사진과 기사가 매우 불쾌하고 괴로웠으며 관음적인 면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더 선」은 사망한 워드의 가족과 친지들에게 애도를 표현하고 기사가 그들에게 주었을 괴로움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나 「더 선」은 원로 간부들이 매우 오랫동안 심사숙고해 내린 결정인 만큼 사진을 게재한 것은 정당하다고 반박했다. 또 「더 선」은 투신자살 사건이 공공 장소에서 일어났고 지나가던 많

은 사람들에게 의해 목격됐으며 제목과 내용을 포함한 사진의 공개 방법 역시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더 선」은 기사내용이 매우 간결하고 사실만 다뤘을 뿐 죽음을 사소하게 다루거나 언짢은 세부 사항들을 추잡하게 파고들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더 선」은 두 사진은 모두 흑백으로 매우 작게 인쇄되었고 자신들은 워드라는 것을 알아볼 수 없었으며 첫 번째 기사에서 워드를 ‘미국인 방문객’으로 표현했으므로 독자들은 워드를 관광객으로 생각했을 것이라 주장했다. 「더 선」은 보도가치가 있는 사건을 책임감 있고 도를 넘지 않는 선에서 다루었다고 말했다.

이 사건에 대해 PCC는 사진의 공개가 사망한 워드와 가까웠던 사람들에게 더욱 큰 슬픔을 안겨 주었을 것이며 불만신청인의 주장대로 사진이 불쾌했으며 게재되지 않았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해했다.

그러나 PCC는 이 기사가 강령을 위반한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데 있어 중요한 것은 기사가 맘에 드는지 안 드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물론 불만신청인을 포함해 고인과 가까웠던 사람들에게는 이 사건이 일반적인 관심 이상임은 인정되나 기사의 주제가 되거나 언론의 활동에 직

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개개인의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해 강령이 존재하며 강령을 직접적 당사자가 아닌 개인이 편집장의 판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수단으로 이용할 수는 없다고 PCC는 밝혔다. 다만 PCC는 기사의 사진이 일반 독자들에게 혐오감을 주었을 수 있다는 의견을 참고했다.

PCC는 강령을 토대로 슬픔과 충격이 큰 시기에 신문사가 해당 기사를 “신중하게 다루었는지”를 판단했다. 비록 PCC 강령에는 상세히 명시되어있지 않지만, PCC는 이 사건의 경우 뉴스가 고인의 사망 소식을 직계 가족들에게 최초로 알리게 된 것인지 여부도 고려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PCC는 먼저 「더 선」이 PCC 강령 중 5번째 조항인 “슬픔과 충격에 부정적인 개입”을 위반하지 않고 기사를 신중하게 보도했는지 확인했다. PCC는 신문사의 편집진이 주관적인 판단을 내렸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강령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또한 PCC는 공공장소에서 일어난 사건의 사진을 담는다고 해서 신중한 접근이 소홀히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전제 하에 공공장소에서 일어난, 보도할만한 가치가 있는 사건을 늦추는 것은 언론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라고 판단

했다. PCC는 이번 사안은 공공장소에서 일어난 이례적인 사망 사건이므로 보도할만한 가치가 있는 사건이라고 판단했다. 물론 신문사가 보도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해서 사건을 가볍게 표현하거나 불필요하게 자극적인 보도를 하는 등 격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전혀 아니며 만일 신문사가 그렇게 했다면 강령을 위반한 것이 된다. 그러나 이번 보도는 고인의 죽음을 사소하거나 선정적으로 표현하지 않았고 사진과 글 역시 불필요하게 선정적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PCC는 불만신청인이 제기한 PCC 강령 다섯 번째 조항에 대한 불만을 인정하지 않았다.

PCC는 두 번째로 고인의 사망 소식을 직계 가족이 기사를 통해 처음으로 알게 되었는지를 확인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PCC는 해당 기사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그 이유로 PCC는 당시 해외에 있었던 가족들이 신문을 통해 사망소식을 처음 접했다는 것을 밝혀줄 단서가 없다는 점을 들었다. PCC는 기사에 실린 사진이 고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을 만큼 크거나 뚜렷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기사가 고인의 몇몇 친구들에게 처음으로 사망 소식을 알렸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PCC는 일반적으로 고인의

직계 가족이 사망소식을 기사나 뉴스를 통해 처음 접하게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보지만 고인과 관련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이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밝혔다. 다만 PCC는 고인의 가족들이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 가족원의 사

망소식을 처음 접하게 하지 않도록 편집장이 신중하게 처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가능하다면 보도 전에 가족들이 가족원의 사망에 대해 알고 있는지 확인해주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다는 것과 “이혼에 대한 스트레스를 이유로 2년 동안 거의 매일” 의사가 집을 방문한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불만신청인은 기자가 매체를 통해 자신에 대한 ‘사적인 복수’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불만신청인은 기자가 “거짓말하고”, “증거를 조작해서 굉장한 기사를 만들어내려고”했고, “소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신문에 기재함으로써 사생활을 침해”했으며 “전체적으로 기사가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만신청인은 해당 기사들이 “보도 자료는 항상 정확성, 공정성, 밸런스를 유지해야 하며 의도적으로 잘못된 사항을 전하면 안 된다”라는 신문평의회 강령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불만신청인은 6월 12일자 신문에 자신이 시니어 A급 선수라고 보도한 것은 사실과 다르며 자신은 오클랜드 테니스 협회의 C급과 동급인 S7로 등록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또 6월 12일자 기사의 제목이 “백만장자, ‘거의 매일’ 의사를 만났다”라고 되어있는데 실제로는 3일에 한번이나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본 것이므로 해당 기사의 제목은 부정확한 것이며 기자와 신문이 그의 건강상태를 기재하지 않았어야 한다고 비판하고 신문이 전(前) 아내의 이름을 잘못 표기했다고

### 뉴질랜드 사례

#### 기사의 일부 내용을 독자가 오도할 여지가 있다면 이를 정정해야 한다

뉴질랜드 신문평의회는 자신에 대한 기사가 사생활을 침해했고 불공평하며 편협하다는 이유로 제프 페이지가 「헤럴드 온 선데이」를 상대로 제기한 불만신청에 대해 일부 주장을 받아들였다.

불만신청자는 「선데이 스타 타임즈」가 지난 2004년 9월 26일에 보도한 기사와 「헤럴드 온 선데이」가 지난 2005년 3월 20일과 6월 12일에 각각 보도한 세 개의 기사에 대해 불만을 신청했다(앞의 두 개 기사는 불만신청 기간을 초과했지만 뉴질랜드 신문평의회는 기간이 지난 두 기사를 불만신청 기간이 지나지 않은 2005년 6월 12일자 기사의 배경 기사로 인정하기로 했다).

문제가 된 기사는 불만신청인이 ACC로부터 매주 640달러의 보조금을 받고 있는 ‘억만장자 땅부자’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첫 번째 기사는 불만신청인의 사업소득과 테니스 치는 능력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전 법률에 따라 ACC로부터 매주 640달러의 보조금을 받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두 번째 기사는 불만신청인이 더욱 많은 액수의 일시불 형태의 보상을 받기 위해 ACC를 상대로 낸 소송을 다루고 있는데 ACC가 1974년도에 보수를 주기로 한 중재 계약을 어겼다는 불만신청인의 주장을 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사는 불만신청인이 매주 640달러를 받는

덧붙였다.

이에 대해 「헤럴드 온 선데이」의 편집장은 불만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박했다. 편집장은 “기사는 충분히 ‘정당한 대중의 관심거리’였으며 특히 이 일은 많은 양의 세금이 관련된 것이고 3월 20일자 기사와 6월 12일자 기사는 다른 신문에서 취재가 이미 되었던 것을 새로운 각도에서 재조명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편집장은 기사의 균형과 공정성을 준수하는 것에 대해 불만신청인의 견해를 물었었고 기사에도 포함시켰을 뿐 아니라 불만신청인이 편집장에게 쓴 두 장의 편지도 함께 보도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편집인은 불만신청인의 세부 불만에 대해 첫째, 기사가 오클랜드 테니스 협회 관계자를 만나 인터뷰한 결과 불만신청인을 “같은 연령의 다른 클럽 회원들과 비교했을 때 A급의 실력을 갖춘 시니어 플레이어”라고 설명했고 현재의 순위를 봤을 때도 불만신청인이 신문평의회에 밝힌 것보다 더 좋은 선수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기사에 실었다고 해명했다. 둘째로 “백만장자, ‘거의 매일’ 의사를 만났다”라는 기사를 쓴 까닭은 불만신청인이 법정 반대 심문 때 “몇 년간 매일, 혹은 자주” 의사를 만났다는 주장을 반박하지 않았기 때

문이며 기자가 법정서류 검토 차 불만신청인과 통화를 했을 때도 의사를 만난 횟수에 대해선 아무 얘기가 없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편집장은 불만신청인의 건강 기록을 기사에 신지 말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정보가 법정 증언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나온 것이고 이에 따라 해당 내용은 공공적인 기록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편집장은 전(前) 아내의 이름을 잘못 기재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질랜드 신문평의회는 신문사가 ACC 보상과 관련해 진행 중인 사건을 보도한 두 개의 기사는 ACC의 원칙과 계획이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므로 당연히 공개 토론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뉴질랜드 신문평의회는 처음 두 개의 기사는 불만신청인이 “보상 지급이 결정된 시기의 법률에 따라서 보장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ACC 대변인의 말을 포함시켰으므로 양쪽의 균형이 유지되었다고 봤다. 또 뉴질랜드 신문평의회는 불만신청이 제기된 6월 12일자 기사에 대해 불만신청자인 전(前) 아내를 상대로 낸 소송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재판 서류를 참고하여 보조금을 받고 협력하는 의사와 그 때문에

정부 보조금을 받는 부유한 사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결론적으로 뉴질랜드 신문평의회는 모든 기사가 불만신청인의 주장을 일정 정도 반영하고 있으며 불만신청인의 의견과 관점을 담기 위해 불만신청인과 접촉한 점을 인정했다. 따라서 뉴질랜드 신문평의회는 불만신청인이 제기한 불공정성과 불균형적 태도를 포함한 일반적 불만을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뉴질랜드 신문평의회는 불만신청인이 세부적인 불만사항으로 거론했던 내용 중 “백만장자는 의사를 거의 매일 만났다”는 제목은 약간의 과장이 없지 않아 있지만, 불만신청인이 법정에서 만남의 빈도에 대한 내용을 문제 삼지 않았고, 기자가 세부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했을 때도 별다른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으며 더욱이 ‘거의 매일’이라는 구어적인 표현은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부수적이고 미미한 부분으로 판단, 불만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뉴질랜드 신문평의회는 ‘시니어 A급’ 선수라고 잘못 표기한 것과 관련한 불만신청인의 불만을 반박한 편집장의 최초 발언을 인정하지 않았다. 사실확인 결과, 불만신청인은 활발하고 역량

이 있는 선수인지 모르지만 '시니어 A급' 선수가 되기에는 아직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 분명해 보였으므로 뉴질랜드 신문평의회는 취미로 테니스를 즐기는 정도의 선수라는 불만신청인의 주장과 증거를 인정했다.

뉴질랜드 신문평의회는 신문사가 언론 윤리를 크게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문제가 된 기사의 일부 내용에 불만신청인을 오도할 수 있는 여지가 담겨 있으며 ACC의 보조금이 불만신청인의 건강상태나 수입에 대한

조건을 따지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지 않은 잘못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뉴질랜드 신문평의회는 불공정성과 불균형적인 보도에 대한 일반적 불만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세부 사항 중 몇 가지에 대한 불만은 인정했다.

이번 불만신청을 판결한 신문평의회 임원들은 위원장 Barry Paterson을 포함해서 Lynn Scott, Aroha Puaton, Denis McLean, Terry Snow, Keith Less, Clive Lind 이고 John Gardner는 이번 판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

기사를 뒷받침하는 미국 언론의 기사를 호주신문평의회에 제출했다. 불만신청인은 이집트 신문에 정정보도를 요구했으나 이집트 신문이 이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그들의 답변에 대해 큰 불쾌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이집트 신문의 편집장인 사미에르 하바시 씨는 호주신문평의회 수사가 완결될 때까지 정정보도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이후 다른 답변은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호주신문평의회는 기사의 출처를 밝히지 않고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신속하게 정정보도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집트 신문의 잘못을 인정하고 불만신청인의 불만을 인정하였다.

호주신문평의회는 호주는 다수의 민족 언론사가 공존하는 복수문화적인 나라이며 이들의 논쟁은 대부분 격렬하고 논란성이 짙다고 평가하고 토론은 당연히 장려되어야 하지만 대신 언론사들이 사실에 의거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칙을 지켜주길 당부했다.

호주신문평의회는 새로운 기사의 출처를 분명히 밝히고 기사가 사실에 부합하는지를 거듭 확인하는 것이 바로 신문사의 책임이며 문제를 인식하게 되면 신속히 정정보도를 하는 것도 언론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

## 호주 사례

### 기사의 출처를 밝히지 않고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신속하게 정정보도를 하지 않은 언론사의 태도는 잘못된 것이다

호주신문평의회는 호주 이슬람 복지회를 대표해 파텐 엘-다나 씨가 아랍어로 발행되는 콥트인들을 위한 지역 신문 이집트 뉴스를 상대로 낸 불만신청을 인정했다. 불만신청인은 이집트 뉴스가 지난 2005년 1월 18일 『미국 뉴저지에서 이슬람식으로 콥트 가족들을 죽이고 있다』 제하의 기사에서 “이슬람 인들이 콥트 사람들을 살해했으며 그곳에는 대부분 이슬람 사람들로 구성된(현재

활동 중이 아닌) 이슬람 조직들이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출처가 불분명 할 뿐 아니라 단지 이슬람 인들을 비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불만을 제기했다. 불만신청인은 2005년 3월 6일 또 다른 이집트 신문인 「알-아람」은 살인이 이슬람인들과는 무관하고 뉴저지 경찰이 미국인인 에드워드 맥도널드와 해밀턴 산체스를 용의자로 검거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알-아람」의